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고시

제1조(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대표자	주사무소	연락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1577-0990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